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복지·고용·주거 및 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 및 업무를 조정하므로서 시민편익의 서비스 행정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함.(안 제5조)
- 실업대책, 공공근로, 고용안정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서비스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평생교육·실업대책·공공근로·고용안정·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들이 오히려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게 되는게 아닌가?</p> <p>○ 행자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p>	<p>○ 복지, 고용,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의 생활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기구 개편임</p> <p>○ 행정기구 개편 취지대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3호
의결 년월일	2006.12.21 (제132회)

제출년월일 : 2006. 11.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복지·고용·주거 및 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 및 업무를 조정하여, 시민편익의 서비스 행정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함.(안 제5조)
- 실업대책, 공공근로, 고용안정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서비스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평생교육·실업대책·공공근로·고용안정·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0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실업대책·공공근로·고용안정·노사협력”을 “노사협력”으로 한다.

제10조 제목중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복지국에”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며, 동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2호(종전의 제1호)중 “장애인복지, 자원봉사”를 “장애인복지”로 한다.

1. 주민서비스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평생교육·실업대책·공공근로·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u>복지국</u> , 환경수도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5조(국의 설치) ----- ----- ----- <u>주민생활지원국</u> ,----- -----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경제 · 유통 · 실업대책 · 공공공근로 · 고용안정 · 노사협력 · 가스 · 에너지에 관한 사항</u> 2.~5. (생략)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 ----- 1. ----- <u>노사협력</u> ----- ----- ----- 2. ~5. (현행과 같음)
제10조(<u>복지국</u> 에 두는 과) ① <u>복지국</u> 에 <u>사회복지과</u> , <u>가정복지과</u> , <u>체육청소년과</u> , <u>위생과</u> 를 둔다. ② <u>복지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u>서민생활보호대책</u> , <u>장애인복지</u> , <u>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 2.~4. (생략)	제10조(<u>주민생활지원국</u> 에 두는 과) ① <u>주민생활지원국</u> 에 <u>주민생활지원과</u> , ----- ② <u>주민생활지원국장</u> ----- ----- 1. <u>주민서비스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 평생교육 · 실업대책 · 공공근로 ·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 2.----- <u>장애인복지</u> ----- ----- 3.~5. (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